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8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12일

나. 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률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조항의 상위법률 근거조항 정비 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함

○ 검토 결과

- 본 안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이 '21.12.28. 개정됨에 따라 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8. .

발 의 자: 최봉희·김지연·박현우

유승용·이규선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상위법률 근거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목적 조항의 상위법률 근거조항 정비 (안 제1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8. 12. ~ 8. 16.)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”을 “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과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